

# 남 해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 639호 2019. 7. 4.(목)

## 규 칙

남해군 규칙 제1156호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1

##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19-74호 도시계획도로(소로2-37호, 남해군청~서변마을회관) 개설공사 및 도시계획 도로(중로3-1호, 노인복지관~운동장) 개설공사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8

남해군 고시 제2019-7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 14

남해군 고시 제2019-76호 남해군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 고시 ..... 15

##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19-842호 남해군 생활SOC복합화 사업 (가칭 꿈나눔센터) 보상계획 열람공고 21

남해군 공고 제2019-848호 공시송달공고 ..... 24

남해군 공고 제2019-859호 남해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7

남해군 공고 제2019-860호 남해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48

남해군 공고 제2019-872호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53

남해군 공고 제2019-893호 남해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55

남해군 공고 제2019-896호 공시송달 공고 ..... 60

회 람									
-----	--	--	--	--	--	--	--	--	--

발행 : 남해군                      편집 : 기획예산담당관(860-3045, 행정 3045)



규 칙

남해군 규칙 제1156호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남해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한다.

2019년 7월 4일

남 해 군 수

##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환경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을 “환경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호 중 “지방행정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을 “지방행정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지]

[별표1] 군 본청 사무분장표

<기획예산담당관>

담 당 사 무	비고
① ~ ⑤ <생 략>	<현행과 같음>
<p>⑥ 혁신, 청년정책, 적극행정에 관한 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회혁신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li> <li>2. 사회혁신 사례 도입 및 혁신사업 발굴 지원</li> <li>3. 혁신추진 공모사업 기획·추진</li> <li>4. 정부혁신 계획 수립·추진</li> <li>5. 정부혁신 과제 및 우수사례 발굴 및 평가</li> <li>6. 행정제도 개선 및 행정협업에 관한 사항</li> <li>7. 혁신과제 발굴 추진</li> <li>8. 혁신동아리 운영</li> <li>9. 민관협력 우수사례 발굴·확산</li> <li>10.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 조정</li> <li>11. 청년정책 신규시책 발굴</li> <li>12. 적극행정 업무 총괄 추진</li> </ol>	<p>신설</p>

<관광진흥담당관>

담 당 사 무	비고
① ~ ④ <생 략>	<현행과 같음>
<p>⑤ 문화재 보존 관리에 관한 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문화재 지정 및 보수정비사업</li> <li>2. 문화유적 발굴 조사 및 관리</li> <li>3. 문화유적 지표조사 업무 전반</li> <li>4. 문화재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li> <li>5. 문화재 현상변경에 관한 사항</li> <li>6. 남해관음포이충무공유적 운영관리</li> <li>7. 충렬사·거북선 운영관리</li> <li>8. 명승 및 천연기념물 관리</li> <li>9. 비지정문화재 학술조사에 관한 사항</li> <li>10. 향교 및 관내사우 운영·지원 관리</li> <li>11. 전통사찰 보수 및 관리</li> <li>12. 무형문화재 운영 관리</li> <li>13. 서불과차 문화관광 자원화 사업</li> <li>14. 고려대장경 관각지 관련 사업 전반</li> <li>15. 노도 문학의 섬 조성</li> <li>16. 남해군 향토유적 등 보호위원회 운영 관리</li> <li>17. 남해가천마을다랑이논 보존 및 정비사업</li> <li>18. 남해가천마을다랑이논보존위원회 운영 관리</li> <li>19. 그 밖의 문화재 관련 사항</li> </ol>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재무과>

담 당 사 무	비고
① ~ ⑤ <생 략>	<현행과 같음>
<p>⑥ 청사신축에 관한 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청사건립특별회계 운영</li> <li>2. 청사신축 추진위원회 관리</li> <li>3. 신축 대상지 부지보상</li> <li>4. 청사 신축을 위한 군민 여론 수렴</li> <li>5. 청사 신축 행정절차 이행</li> <li>6. 공공건축물 리뉴얼 사업 관리</li> <li>7. 청사 신축 공사 관리</li> </ol>	<p>신설</p>

<문화청소년과>

담 당 사 무	비고
① ~ ④ <생 략>	<현행과 같음>
<p>⑤ 문화재 보존 관리에 관한 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문화재 지정 및 보수정비사업</li> <li>2. 문화유적 발굴 조사 및 관리</li> <li>3. 문화유적 지표조사 업무 전반</li> <li>4. 문화재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li> <li>5. 문화재 현상변경에 관한 사항</li> <li>6. 남해관음포이충무공유적 운영관리</li> <li>7. 충렬사·거북선 운영관리</li> <li>8. 명승 및 천연기념물 관리</li> <li>9. 비지정문화재 학술조사에 관한 사항</li> <li>10. 향교 및 관내사우 운영·지원 관리</li> <li>11. 전통사찰 보수 및 관리</li> <li>12. 무형문화재 운영 관리</li> <li>13. 서불과차 문화관광 자원화 사업</li> <li>14. 고려대장경 판각지 관련 사업 전반</li> <li>15. 노도 문학의 섬 조성</li> <li>16. 남해군 향토유적 등 보호위원회 운영 관리</li> <li>17. 남해가천마을다랑이논 보존 및 정비사업</li> <li>18. 남해가천마을다랑이논보존위원회 운영 관리</li> <li>19. 그 밖의 문화재 관련 사항</li> </ol>	삭제

<지역활성효과>

담 당 사 무	비고
① ~ ④ <생 략>	<현행과 같음>
⑤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 1. 도시재생사업 뉴딜사업 추진 2. 읍면소재지 농어촌형 도시재생사업 3. 청사이전 공모사업 신청 및 행정타운 조성 4. 도시재생 지역역량강화사업 추진 5. 지역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의 발굴 및 추진 6. 그밖의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	삭제
⑥ <생 략>	⑤로 변경

<도시건축효과>

담 당 사 무	비고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 1. 도시재생사업 뉴딜사업 추진 2. 읍면소재지 농어촌형 도시재생사업 3. 청사이전 공모사업 신청 및 행정타운 조성 4. 도시재생 지역역량강화사업 추진 5. 지역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의 발굴 및 추진 6. 그밖의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	신설
② ~ ⑤ <생 략>	각각 ③ ~ ⑥ 으로 변경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19 - 74호

**도시계획도로(소로2-37호, 남해군청~서변마을회관)  
개설공사 및 도시계획도로(중로3-1호, 노인복지관~운동장)  
개설공사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도시계획도로(소로2-37호, 남해군청~서변마을회관) 개설공사 및 도시계획도로(중로3-1호, 노인복지관~운동장) 개설공사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와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인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6. 18.

남 해 군 수

# 남 해 군 공 보

2019년 7월 4일

제 639 호 (9)

##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구분	종류	위치	비고
도시계획도로 (소로2-37호, 남해군청~서변마을회관) 개설공사	남해군계획시설사업 (교통시설 : 도로)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서변리 일원	
도시계획도로(중로3-1호, 노인복지관~운동장) 개설공사	남해군계획시설사업 (교통시설 : 도로)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서변리 일원	

## 2.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구분	구 모				결 정(M)		금 회(M)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m)	폭	연장	폭	연장	
도시계획도로 (소로2-37호, 남해군청~서변마을회관) 개설공사	소로	2	37	8	8	237	8	71	
도시계획도로(중로3-1호, 노인복지관~운동장) 개설공사	중로	3	1	12	12	1,248	12	194	

## 3.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명 : 남해군수(도시건축과)
- 주소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 4. 사업기간

구분	사업기간		비 고
	당초	변경	
도시계획도로 (소로2-37호, 남해군청~서변마을회관) 개설공사	착공일로부터 12개월	2018.9.27. ~ 2020.2.29.	
도시계획도로(중로3-1호, 노인복지관~운동장) 개설공사	착공일로부터 12개월	2018.10.2. ~ 2020.2.29.	

## 5. 실시계획변경인가 사유

- 소유권 변동사항 정정 및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공기연장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조서 : 붙임 1 참조

## 7. 관계도면 : 실음생략 【남해군청 도시건축과(☎055-860-3415)에 비치】

붙임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조서 1부. 끝.

# 남 해 군 공 보

(10) 제 639 호

2019년 7월 4일

[붙임 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지장물조서

1. 공사명 : 도시계획도로(소로 2-37호, 남해군청~서변마을회관) 개설공사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일 련 번 호	소 재 지		지 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비 고
	읍·리	지번				주 소	성 명		
1	남해읍 아산리	419-7	대	18	18		남해군	-	
2	남해읍 아산리	419-14	대	3	3		남해군	-	
3	남해읍 아산리	1433	도	1,601	98		국(국토교통부)	-	
4	남해읍 서변리	323-1	전	86	79		남해군	-	
5	남해읍 아산리	406-4	전	81	60		남해군	-	
6	남해읍 아산리	406-2	도	33	30		남해군	-	
7	남해읍 아산리	405-1	대	13	7		남해군	-	
8	남해읍 서변리	311-1	전	3	3		남해군	-	
9	남해읍 서변리	311-2	도	43	42		남해군	-	
10	남해읍 서변리	311-10	대	8	8		남해군	-	
11	남해읍 서변리	324-1	전	7	7	남해읍 아산리	김O금	-	
12	남해읍 서변리	324-2	도	99	28	남해읍 아산리	김O금	-	
13	남해읍 서변리	323-2	도	69	44		남해군	-	
14	남해읍 서변리	311-11	대	3	3		남해군	-	

○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조서

일 련 번 호	소 재 지		물건 종류	규격	편입 면적 (㎡)	단위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읍· 리	지번 (당초 )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의 종류	
1	남해읍 서변리	311-3	주택	블럭스레트	69	㎡	남해읍 서변리	이O봉	대구 달서구	대구신 용보증 재단	가압류	
			가추1	벽체이용 스레트	6	㎡						
			가추2	선라이트	12	㎡						
			가추3	목조스레트	18	㎡						
			화장실등	블럭스레트	15.75	㎡						
			아래채	블럭스레트	40.5	㎡						
			보일러실	블럭스레트	3	㎡						
			물탱크	철재지지대 포함	1	식						
			대문	새시조	1	식						
			바닥포장	콘크리트	32	㎡						
			아궁이		1	식						
			석류	R25	1	주						
			화단	2*5	1	식						
								대구 동구	이O숙	가압류		
								서울 종로구	서울보 험협 회 주 식 회 사	가압류		
								대구 수성구	이O율	근저당		
								대구 수성구	정O수	근저당		
								서울 강남구	메가주 식회사	근저당		

# 남 해 군 공 보

(12) 제 639 호

2019년 7월 4일

2. 공사명 : 도시계획도로(중로 3-1호, 노인복지관~운동장) 개설공사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일 련 번 호	소 재 지		지 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비 고
	읍·리	지번				주 소	성 명		
1	남해읍 아산리	355-2	도	5,248	117		남해군	-	
2	남해읍 아산리	409-7	답	379	379		남해군	-	
3	남해읍 아산리	414-12	답	40	40		남해군	-	
4	남해읍 아산리	1433	도	1,601	63		국(국토교통부)	-	
5	남해읍 아산리	419-8	답	27	27		남해군	-	
6	남해읍 아산리	419-11	대	92	92		남해군	-	
7	남해읍 아산리	419-9	대	11	11		남해군	-	
8	남해읍 아산리	419-13	대	167	167		남해군	-	
9	남해읍 아산리	419-12	대	20	20		남해군	-	
10	남해읍 아산리	419-10	대	129	129	부산광역시 동래구	강O희	근저당	
11	남해읍 아산리	419-3	도	10	4		남해군	-	
12	남해읍 서변리	324-2	도	99	35	남해읍 아산리	김O금	-	
13	남해읍 서변리	324-6	대	227	227		남해군	-	
14	남해읍 서변리	322-14	전	209	209		남해군	-	
15	남해읍 서변리	326-1	전	269	269		남해군	-	
16	남해읍 서변리	327-2	전	243	243		남해군	-	
17	남해읍 서변리	329-6	대	2	2		남해군	-	
18	남해읍 서변리	329-7	대	10	10		남해군	-	
19	남해읍 서변리	329-8	전	292	283		남해군	-	
20	남해읍 서변리	329-3	전	41	10		남해군	-	
21	남해읍 서변리	329-5	대	59	37		남해군	-	
22	남해읍 서변리	328-2	전	174	165		남해군	-	
23	남해읍 서변리	330-1	전	283	51		남해군	-	

○ 수용 또는 사용할 지장물조서

일 련 번 호	소 재 지		물건 종류	규격	편입 면적 (㎡)	단 위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읍·리	지번 (당초)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의 종류	
1	남해읍 아산리	419-10	주택 (공가)	블록 스레트	58	㎡	부산광역시 동래구	강O희	남해읍 북변리	남해농업 협동조합	근저당	
			부엌	블록 슬라브	6.75	㎡			김해시 구산동	주식회사 세우글로 별	근저당	
			담장	블럭조	30	㎡						
			감나무	R20	1	주						
			은행나무	R100	1	주						
			종려나무	R20	1	주						
			무궁화	R100	1	주						
			귀퉁나무	R12	1	주						
			피라 칸사스	R10	1	주						
			동백나무	R2	15	주						

남해군 고시 제2019 - 75호

##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6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6일

남 해 군 수

1. 하 천 명 : 지방하천(봉천)
2. 성 명 : 남해군수(도시건축과장)
3. 주 소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4. 점용목적 : 신설교량 설치
5. 점용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서변리 491번지(328-2번지 인근)
6. 점용면적 : 164m<sup>2</sup>
7. 점용기간 : 2019. 6. 26. ~ 영구(행위기간 : 2019. 6. 26. ~ 2020. 6. 25.)

남해군 고시 제 2019 - 76호

## 남해군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 고시

「수도법」 제4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수립한 「남해군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을 같은 법 제4조 제5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7. 4.

남 해 군 수

1. 계획의 범위

- 1) 목표년도 : 2035년
- 2) 계획구역 : 남해군 행정구역 전역

2. 계획의내용

1) 수도정비기본계획

- ① 기초조사
- ② 기본사항의 결정
- ③ 시설확충 및 시설개량계획
- ④ 상수도 수질관리계획
- ⑤ 상수도시설 유지관리 및 정보화 계획

2) 상수도 수요관리계획

- ① 수요관리 목표설정
- ② 수요관리 사업계획

3) 상수도시설 안정화 계획

- ① 생산시설의 안정화계획
- ② 공급시설의 안정화 계획
- ③ 수도시설 비상연계계획
- ④ 재해 및 위기관리 대책

4) 재정 및 경영계획

- ① 사업시행 및 재정계획
- ② 수도사업 경영 개선계획

# 남 해 군 공 보

2019년 7월 4일

제 639 호 (17)

3. 장래 계획지표								
구 분		개 요					비 고	
목 표 년 도		기준년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		
급수현황 및 행정구역 면적		·1개읍, 9개면 ·행정구역 총면적 : 357.5km <sup>2</sup>						
계획인구 (인)	자연적	46,711	42,990	40,830	38,520	36,050		
	사회적	46,711	42,820	40,600	38,290	35,820		
	계	-	170	230	230	230		
급수보급률(%)		65.4	89.7	95.3	95.3	95.5		
급수인구(인)		30,553	38,550	38,910	36,700	34,420		
사용량원단위(Lpcd)		202	225	244	244	244		
목표 유수율(%)		36.2	65.0	85.0	85.0	85.0		
급수량 원단위 (Lpcd)	일평균	558	346	287	287	287		
	첨두부하율	1.4	1.4	1.4	1.4	1.4		
	일최대	781	484	402	402	402		
일최대 수요량 (m <sup>3</sup> /일)	소 계		23,870	20,420	17,450	16,560	15,650	
	생활용수			18,640	15,630	14,740	13,830	
	기타용수			1,780	1,820	1,820	1,820	
	공업용수			-	-	-	-	
용수 공급계획 (m <sup>3</sup> /일)	계		20,200	22,100	22,100	22,100	22,100	
	지방	소계	13,700	15,600	15,600	15,600	15,600	시설용량
		아산	3,000	3,000	3,000	3,000	3,000	
		봉성	2,000	2,000	2,000	2,000	2,000	
		난음	3,000	3,000	3,000	3,000	3,000	
		상주	900	900	900	900	900	
		지족	800	800	800	800	800	
		항도	1,000	1,000	1,000	1,000	1,000	
		남면	1,000	1,000	1,000	1,000	1,000	
		대곡	1,000	1,000	1,000	1,000	1,000	
		창선	1,000	1,000	1,000	1,000	1,000	
		노구	-	950	950	950	950	
		고현	-	950	950	950	950	
	광역시	사천	6,500	6,500	6,500	6,500	6,500	
과부족량(m <sup>3</sup> /일)		△3,670	1,680	4,650	5,540	6,450		

4. 시설확충계획

지방상수도 미급수지역에 대한 시설확충계획 수립

구 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
상수원보호구역	노구			
상수관로	배수 : 10.00km 급수 : 30.96km	배수 : 13.37km 급수 : 40.20km		급수 : 1.44km
가압장	5개소	3개소		
감압밸브	10개소	1개소		

5. 시설개량계획

- 1) 수도시설 기술진단에 의한 정수시설 개량계획
- 2) 배수지, 가압장 및 소규모 수도시설 운영현황 조사를 통한 개량계획
- 3) 노후관 개량, 블록시스템 구축 및 관망정비 계획 수립

구 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
취수시설 개량	봉성, 상주, 지족, 향도, 남면, 대곡			
정수시설 개량	아산, 봉성, 난음, 상주, 지족, 향도, 남면, 대곡, 창선, 선원			
배수지 개량	미조, 설리			
가압장 개량	창선, 두모, 봉성, 남면, 연곡, 흥현, 조도, 빛담촌			
노후관 개량	노후관 119.5km		노후관 15.3km	
블록시스템 구축		지방상수도현대화 (2018~2022년) 아산 : 4개블록 봉성 : 4개블록 난음 : 4개블록 남면 : 3개블록 지족 : 1개블록 창선 : 3개블록	상주,벽련 : 3개블록 향도,미조 : 4개블록 노구 : 2개블록 선원 : 2개블록 대곡 : 2개블록	
소규모수도시설 개량	44개 시설 개량	28개 시설 개량		1개 시설 개량

6. 물 수요관리 계획

- 1)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과 연계한 노후관 정비, 블록화 구축 및 누수탐사 계획
- 2) 절수설비 보급 및 빗물이용시설 계획 수립

7. 상수도시설 안정화 계획

- 1) 광역 지방간 비상연계 계획 수립(노구(정),선원(정))
- 2) 인접 시설의 상호 연계로 비상시 공급 계획 수립(지족, 동천 급수구역간 연계)

8. 사업시행 및 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
계	101,380	34,596	29,203	30,235	7,346
시설확충계획	20,975	9,548	11,149	-	278
시설개량계획	33,369	8,060	1,702	23,607	-
유지관리계획	24,611	5,165	6,062	6,472	6,912
정보화계획	5,075	-	4,875	100	100
수요관리계획	11,991	11,823	56	56	56
안정화계획	5,359	-	5,359	-	-

9. 기 타

남해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의 세부 내용과 관계도서는 남해군 상하수도사업소(☎ 055-860-3324)에 비치하고 있으며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19 - 842호

**남해군 생활SOC복합화 사업 (가칭 꿈나눔센터) 보상계획  
열람공고**

『남해군 생활SOC복합화(가칭 꿈나눔센터)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6. 17.

남 해 군 수

1. 사업의 개요

- 가. 사업명 : 남해군 생활SOC 복합화 사업(가칭 꿈나눔센터)
- 나. 위치 :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339번지 일원
- 다. 사업량 : 청소년수련관, 공공도서관, 국민체육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 돌봄센터 등
- 라. 사업시행자 : 남해군수

2. 보상계획

- 가. 보상시기 : 2019년 7월 ~ 2019년 9월 중
- 나. 보상방법 : 개인별 현금 보상(계좌이체)
- 다. 보상절차 : 보상계획 알림→감정평가의뢰 및 실시→보상액 산정→보상협의요청  
→협의→소유권이전 및 보상금지급

3. 감정평가 선정 및 시행

-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 나. 선정방법 : 3인을 선정하되, 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추천하지 않거나 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추천하지 않는 경우 2인 선정
- 다. 추천방법 :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별도로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라. 추천기한 : 보상계획 알림 후 30일 이내

4.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 붙임 참조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추후 지적측량 등 행정사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공고기간 : 공고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6. 기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문화청소년과(☎055-860-86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토지 및 물건조서 1부. 끝.

용 지 편 입 조 서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 적 (m <sup>2</sup> )		소 주 소	자	성 명	비 고
	군	면	리	본		지	총 지 적				
1	남해	남해읍	북변리	347		답	75	75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 38번길 10-3	하*순	
2	남해	남해읍	북변리	345	5	답	79	79	부산광역시 동래구 여고로 63번길 96-4(사직동)	박*순	
3	남해	남해읍	북변리	340		답	194	194	부산광역시 연제구 과정로343번길 43, 105동 2301호	채*엽외 2	
4	남해	남해읍	북변리	345	8	답	65	65	부산광역시 동래구 여고로 63번길 96-4(사직동)	박*순	
5	남해	남해읍	북변리	340	2	답	569	569	부산광역시 연제구 과정로343번길 43, 105동 2301호	채*엽외 2	
6	남해	남해읍	북변리	333	3	답	1,057	1,057	진주시 초장로 14번길 29, 208동 1703호	정*도	
7	남해	남해읍	북변리	338		답	840	840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38번길 26	정*현	
8	남해	남해읍	북변리	330	9	답	108	108	남해군 고현면 남해대로 3628번길 9-2	정*순외 2	
9	남해	남해읍	북변리	334	3	답	427	395	남해군 남해읍 강진만로 80-1	박*정	
10	남해	남해읍	북변리	337		답	540	540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38번길 26	정*현	
11	남해	남해읍	북변리	337	2	답	640	640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38번길 26	정*현	
12	남해	남해읍	북변리	334	6	답	640	640	남해군 남면 남면로 1593번길 24-67	조*민외 1	
13	남해	남해읍	북변리	359	6	답	653	250		남해군	
14	남해	남해읍	북변리	359	7	답	76	76		남해군	
15	남해	남해읍	북변리	335	5	답	187	187		남해군	
16	남해	남해읍	북변리	361	3	답	1,006	1,006		경상남도교육감 (남해교육청교육장)	
17	남해	남해읍	북변리	339		답	1,855	1,855		남해군	
18	남해	남해읍	북변리	335	4	답	1,399	1,399		남해군	
19	남해	남해읍	북변리	339	4	답	87	87		남해군	
20	남해	남해읍	북변리	333	2	답	35	35		남해군	
계							10,532	10,097			

남해군 공고 제2019- 848호

## 공시송달 공고

도시계획도로(중로3-1호, 노인복지관~운동장)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협의 등기우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협의가 불가하여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 6. 17.

남 해 군 수

1. 공익사업의 개요

- 가. 사업종류 : 군계획시설(교통시설: 도로)
- 나. 사업명칭 : 도시계획도로(중로3-1호, 노인복지관~운동장) 개설공사
- 다. 시 행 자 : 남해군수
- 라. 위 치 :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서변리 일원
- 마. 사업면적 : 도로개설 (L=194m, B=12m)
- 바. 사업기간 : 2018.10. ~ 2019.10.

2. 공고내용

- 가. 공고기간: 2019. 6. 17. ~ 2019. 7. 1.
- 나. 송달내용
  - 협의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 협의방법 : 소유자 개별협의 및 현금보상
    - 위 협의기간 중 미 협의 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절차에 따른 손실보상
  - 협의장소 : 남해군청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 (☎055-860-3416)
  - 송달효과 : 보상협의 요청서는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봄

3. 공시송달 내역

- 토지조서: 붙임 참조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및 그 소유자의 성명·주소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일 련 번 호	소 재 지		지 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비 고
	읍·리	지번				주 소	성 명		
1	남해읍 아산리	419-10	대	129	129	부산광역시 동래구 아시아드대로247번길	강○희	근저당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도시계획팀(TEL: 055-860-341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공고 제2019-859호

## 남해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남해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8일

###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2. 개정이유
  -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세무조사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세무조사 정의, 목적, 기본원칙, 다른규정과의 관계(제1조~제6조)
  - 나. 조사대상자 선정, 조사유예(제7조~제10조)
  - 다. 중복조사금지, 사전통지, 연기신청, 수색금지(제11조~제23조)
  - 라. 조사권남용 공무원 조치,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제24조~제25조)
  - 마. 조사계획수립, 조사의 실시, 결과통지(제26조~제33조)
  - 바. 조사공무원 행동수칙 등(제34조)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19년 7월 9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재무과
- 2) 연락처 : 전화 055-860-3462, 팩스 055-860-3705  
이메일 apple720@korea.kr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재무과 재산세팀(전화 055-860-3462)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 남해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남해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여 세무조사가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효율적으로 실시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무조사”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납세자에게 질문하거나 그 납세자의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조사공무원”이란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특정납세의무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명령을 받은 세무공무원을 말한다.
3. “조사책임자”란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조사공무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일반세무조사"란 특정납세자에 대하여 지방세의 과세요건 성립 여부, 과세표준 및 세율의 적정 여부, 비과세 또는 감면의 적정 여부 등을 검증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5. “특별세무조사”란 세금을 탈루한 방법이나 규모로 보아 일반세무조사의 방법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에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 6. "직접세무조사"란 납세자의 사무소, 공장, 사업장 또는 주소지 등에 출장하여 직접 해당 납세자 또는 그 관련이 있는 자 등을 상대로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 7. "서면세무조사"란 직접세무조사 이외에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제출한 서류 등으로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 8. "전부세무조사"란 납세자의 세무조사대상이 되는 기간에 대하여 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 9. "부분세무조사"란 특정 세목·부분 또는 거래 일부에 대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 10. "전산분석"이란 지방세원의 관리를 위하여 납세자의 지방세 관련 전산자료와 지방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수집하는 과세자료 등을 전자적 방법으로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세무조사의 기본원칙)** 세무조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1. 신의성실의 원칙: 세무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 2. 근거과세의 원칙: 세무조사와 부과권의 행사는 법인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 3. 비례의 원칙: 세무조사는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 4. 납세의무자별 구분조사 원칙: 세무조사는 신고의 성실도와 업종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구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세무조사의 관할)** ① 세무조사는 남해군의 지방세를 관할하는 군수가 수행한다. 다만, 부당하게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 받는 등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조사의 효율성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세무조사의 협조)** ① 군수는 납세자 주소지(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사업장(지점, 제조장, 직매장, 하치장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납세지 관할을 달리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 시작 전 또는 조사 진행 중에 협조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협조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기간 내에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회신할 수 있다.

**제6조(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 지방세 세무조사에 관하여 지방세관계법 등 다른 법령 및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조사대상의 선정

**제7조(일반세무조사 대상자)** ① 군수는 해당 납세자의 세원종합관리상황과 서면신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일반세무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정기선정 대상 납세자의 수가 2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세무조사대상자 선정 관련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위원이 세무조사대상자를 식별 할 수 없도록 법인명, 대표자명, 사업장 소재지 등을 표기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심의하여야 한다.

③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지사로 관할이 이전되었으나 경상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결과 세무조사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군수가 세무조사를 수행한다.

④ 군수는 일반세무조사 시 서면세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서면조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2. 1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3. 1백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비과세·감면받은 경우
4. 그 밖에 다른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세무조사를 의뢰하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직접세무조사를 하려면 재산의 취득유형, 지방세 감면규모, 사업규모(취득금액, 종업원 수 등)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⑥ 동일한 납세자에 대한 중복조사방지, 신고납부 풍토 조성, 경제·사회정책의 효율적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평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8조(특별세무조사의 대상자)** ①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는 탈세정보자료에 의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거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자로 하되, 그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신고·납부, 담배의 제조·수입 등에 관한 장부의 기록 및 보관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3.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4.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5. 지방세관계법과 관련된 판례·지침·유권해석 등의 변경으로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서 일반세무조사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제2항의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탈루유형, 재산의 취득유형, 지방세 감면규모, 사업규모(취득금액, 종업원 수 등)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계획과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조사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9조(부분세무조사 대상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원의 특정 항목·부분 또는 거래의 일부 검증으로 조사목적의 달성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납세자를 부분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처리 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법 제88조제4항제2호 단서 또는 법 제96조제5항에(법 제10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3.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특정 세목만을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5.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탈세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6. 명의위장, 차명계좌의 이용 등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7. 위장·가공 거래 등 특정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10조(영세·성실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예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한다.

- 1. 최근 5년간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다만, 최근 5년간 취득가액 3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제외한다.
- 3.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인증된 고용우수 중소기업
- 4.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중 중소기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대상에서 제외한다.

- 1. 해당 법인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
-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으로 등록된 법인이 연간 도급가액 100억원 이상의 시공을 하는 경우
- 3. 법인의 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경우

### 제3장 세무조사 실시

제11조(중복조사금지) ① 동일한 납세자의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 조사를 해서는 아니되며, 조사시작 후에도 중복조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조사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가 세무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복조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부분세무조사를 실시한 납세자에 대하여 전부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부분세무조사를 받은 부분은 전부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2조(조사범위 등의 준수) 조사공무원은 미리 정한 세무조사범위, 기간 및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조사범위 확대의 제한)** ① 조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 중에 조사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1.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다른 과세기간·세목 등과 관련되어 있어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조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법 제77조제2항의 납세자보호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조사방법)** 군수는 조사대상자의 납세성실도 수준, 사업규모, 업종, 과세자료 분석내용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직접세무조사를 하는 때에는 납세자가 비치, 기장하고 있는 장부 및 그와 관련된 증빙서류(전산조직에 의해 장부와 증빙서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전자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조사와 그 장부의 진실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각종 현황조사, 거래처 또는 현장조사
2. 서면세무조사를 하는 때에는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지방세의 납부 또는 과세의 적정여부를 검증할 수 없는 경우에 제1호의 조사방법을 준용
3. 부분세무조사를 하는 때에는 지방세원의 특정 항목·부분 또는 거래일부의 적정여부를 검증할 수 없는 경우에 제1호의 조사방법을 준용

**제15조(조사장소의 한정)** 세무조사는 납세의무자의 주소·거소·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실시한다. 다만, 해당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조사시간의 제한)** 세무조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납세자의 일과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요구가 있거나 납세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일과시간 외에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사유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때 사전통지 생략이유 등을 기재한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8조(세무조사의 연기신청) ① 제17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군수에게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1. 화재나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 2.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세무조사연기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조사기간) 군수는 조사대상 세목·업종·규모·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을 2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사기간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제20조(조사기간의 계산) 조사기간은 조사시작일(최종 자료제출일 부터 기산한다) 부터 조사종결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조사기간 중 토요일·공휴일 등을 포함한다.

제21조(조사기간 연장의 제한) 군수는 세무조사를 시작한 후 기한 내에 법 제8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되는 날부터 20일 이내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중지기간은 세무조사 기간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공무원은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조사와 관련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 등의 검사·조사 또는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제22조(수색, 압수 등의 금지) ①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납세자의 주택 또는 사무실 등을 수색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압수·영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범칙행위가 행하여지는 것을 발견한 경우
- 2. 비밀장부 등 범칙증거를 발견한 경우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조사공무원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지방세 범칙사건조사로의 전환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장부·서류 등을 압수·영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압수·영치증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압수·영치목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3조(장부, 서류 등의 예치) ①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탈루혐의에 대한 증거서류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장부·서류 등을 예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부·서류 등을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예치증 및 별지 제5호 서식의 예치목록을 내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장부·서류 등의 예치는 조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조사권남용 조사공무원 등에 대한 조치) 군수는 정당한 절차와 적법한 방법이 아닌 조사편의 등의 수단으로 조사권을 남용한 조사공무원과 조사책임자에 대하여는 재발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조사권 행사의 제한과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 ① 조사대상 납세의무자 및 그와 관련된 자에 대한 조사권의 행사는 해당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는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석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제4장 조사사무관리

제26조(조사계획수립) ① 군수는 업무량과 인력사정 등을 고려하여 연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일 납세자에게 중복조사를 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7조(조사준비)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의 시작에 앞서 활용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분석, 검토하여 조사대상자에 대한 문제점과 중점조사 사항을 도출하는 조사방향을 설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신고납부 내용
2. 전산분석 자료
3. 행정기관 자료
4. 그 밖의 정보 및 수집자료 등

② 조사공무원은 준비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하여 준비조사서를 작성하고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조사책임자는 효과적인 조사업무가 집행되도록 미리 조사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조사공무원에게 지시하여야 한다.

제28조(조사의 시작 등)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납세자 또는 관계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현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이 서면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권리현장의 요지와 설명사항을 납세자 또는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29조(조사진행관리) ① 조사공무원은 준비조사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조사책임자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빠짐없이 조사하고, 그 조사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조사책임자는 선정된 조사대상에 대한 조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앞으로 조사할 사항과 새로운 문제점에 대하여 조사공무원에게 지시하여야 한다.

③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에서 드러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명확한 증거서류를 확보하고, 분쟁의 소지를 미리 예방하여야 한다.

제30조(조사의 종결)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종결하려는 경우에는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여 조사책임자에게 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종결 보고를 받은 조사책임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조사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1조(세무조사 결과통지)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결과를 확정하였을 때에는 조사결과를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 대상 기간 및 세목
2.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그 사유 및 산출근거
3. 법 제49조에 따라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
4.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과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방세징수법」 제22조에 따른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사결과를 통지하려는 날부터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 또는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3. 납세자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폐업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4.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5. 법 제88조제4항제2호 단서 및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마친 경우
6. 납세자가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제32조(과세정보 통보와 조사기법의 개발보급) ① 조사과정에서 파악되는 각종 과세 정보는 "과세자료처리대장"에 등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과세자료 또는 국세와 관련된 자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법령 및 제도상의 문제점이 시정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조사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기 위하여 조사기법사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33조(세무조사 명부 및 자료 관리) ① 군수는 세무조사 대상 법인의 현황·조사연혁 및 폐업사실 등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중복 세무조사 방지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다음 각 호를 표준 지방세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 대상자
2. 세무조사 기간·내용·추징세액·추징사유·불복내용 등
3. 납세자별, 세목별 세무조사 결과 대장 관리 등 기타 필요한 업무

③ 군수는 세무조사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최적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 제5장 보칙

제34조(조사공무원 행동수칙 등) ① 법 제140조제2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군수가 조사공무원별로 1매씩 발급하고, 퇴직·전출 등의 변동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증표를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별표1의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조사공무원의 수칙

1. 조사공무원의 기본자세

- 1)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무원 수칙」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를 지켜야 한다.
- 2) 조사공무원은 공평과제 실현 및 재정수입 조달의 주역이라는 긍지와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조사에 임하여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3)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무원으로서의 자질 향상과 조사기법의 개발을 위하여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 4) 조사공무원은 세정의 역군으로서 지방공무원의 거울이 됨을 명시하고 조사에 임하여서는 불필요한 언행을 삼가며 항상 친절하고 예의바른 자세와 존댓말을 사용하여야 한다.
- 5) 조사공무원은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세무조사로 인한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의 불편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 6) 조사공무원은 관련법류를 적용함에 있어 무리하게 확대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 7)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법률에 정하여진 경우 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8) 조사공무원은 어떠한 청탁이나 부정·불의와도 타협해서는 아니 되며, 조사 착수 전, 조사 진행 중, 조사 종결 후 그 어느 때에도 식·음료 등 일체의 향응을 제공받거나 금품수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사 착수 전에 지켜야 할 사항

- 1)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가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수집·분석하는 등 준비조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2) 조사공무원은 조사계획 등 관련정보가 사전에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3) 관리자는 조사공무원에게 조사 출장 전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4) 조사공무원은 소정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관리자에게 제출하고 출장에 임하여야 한다.

### 3. 조사를 시작할 때 지켜야 할 사항

- 1) 조사공무원은 조사 처에 도착 즉시 조사 착수 상황, 연락처 등을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2) 세무조사를 착수할 때에는 조사원증을 제시하고 지방세 납세자 관리현장을 교부하여야 하며 납세자에게 조사사유, 조사기간 및 범위를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 3)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설명으로 납세자의 이해를 구하고, 그 사실을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지휘에 따라야 한다.

### 4. 조사 진행 중에 지켜야 할 사항

- 1) 조사공무원은 조사업무 수행 중에 조사목적을 벗어나 사적편의 제공을 일체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 2)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납세자의 주택이나 사업장 또는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현장에서 발견된 비밀장부나 주요 증빙서류를 납세자로부터 임의 제시 받았을 경우에는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보관할 수 있다.
- 3) 조사공무원은 조사계획에 의한 조사방법·조사범위·조사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다만, 조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납세자에게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 4) 조사내용에 대하여 납세자 또는 납세자가 위임한 세무대리인이 이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조사현장에서 그 옳고 그름을 다투어서는 아니 된다.
- 5) 조사내용의 이견에 대하여 납세자측의 주장이 옳을 경우에는 즉시 시정해야 하며,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되,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 6) 조사공무원은 다툼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관련증빙을 확인하여 납세자의 불복청구나 쟁송에 대비하여야 한다.

- 7) 조사공무원은 매일의 조사를 마치면서 납세자의 협조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시해야 하며, 다음 조사일시를 명확히 예고하되, 약속일시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납세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 8) 조사공무원은 매일의 조사내용을 관리자에게 상세히 보고하고, 앞으로의 조사방향을 지시받아야 한다.
- 9) 조사공무원은 조사와 관련하여 대내외로부터의 청탁이나 압력을 받은 경우 이를 즉시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조사를 마칠 때 지켜야 할 사항

- 1) 조사공무원은 조사를 마칠 때에는 납세자에게 조사가 종결되었음을 알리고, 조사 기간 동안 성실히 조사에 협조하여 준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하여야 한다.
- 2) 조사공무원은 조사 중에 제출받은 조사관련 장부와 증빙서류를 납세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와 증빙의 반환으로 과세에 중대한 문제가 야기 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납세자의 동의하에 일정 기간 보관할 수 있다.
- 3) 조사공무원은 조사종결 즉시 종결복명을 하고,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4) 조사공무원은 결정전 조사내용 통지 전까지 조사적출내용 등 조사 진행 사항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한다.
- 5) 납세자가 조사내용의 통지를 받고 그 내용에 이의가 있어 이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6) 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과세자료 또는 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적절히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도상의 문제점을 발견할 경우에는 세법 등 개정건의서에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 7) 납세자가 권리행사(불복청구, 기타 세법에 의하여 납세자가 갖는 권리의 행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관련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b>세무조사연기신청서</b>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법 인 명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주소·거소 또는 영업소		
<b>신 청 내 용</b>			
당초조사기간			
연기신청기간			
연기신청사유			
<p>「지방세기본법」 제8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세무조사 기간을 연기 신청합니다.</p> <p style="margin-top: 2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20px;">신청인 :                    (서명 또는 인)</p> <p style="margin-top: 20px;">남해군수 귀하</p>			
구비서류			수수료
			없 음

[별지 제2호서식]

압 수 · 영 치 증

법인명(상 호)

소재지(사업장)

대표자(성 명)

조세범처벌절차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납세의무자에 대한 별첨 목록의 서류 등을 조사기간 동안 당 기관에 압수·영치합니다.

압수·영치사유

압수·영치기간

압수·영치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입회인 등

소속

성명

서명날인 거부 부기

년 월 일

남 해 군 수

[별지 제3호서식]

압 수 · 영 치 목 록

일련 번호	물 건 명	수 량	제 출 자	소 유 자	비 고

[별지 제4호서식]

예 치 증

소재지(사업장)	
법인명(상 호)	
대표자(성 명)	(당 세)

위 업체에 대한 특별조사와 관련하여 별첨 목록의 서류 등을 조사기간 동안 관서에 예치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직 급	
성 명	(인)

남 해 군 수

[별지 제5호서식]

예 치 목 록

일련 번호	물 건 명	수 량	제 출 자	소 유 자	비 고

남해군 공고 제2019-860호

**남해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9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남해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최근 5년간 개최 실적이 없는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폐지(정비)함으로 위원회 관리에 따른 행정력 소모를 방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제5장 유통분쟁위원회(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삭제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19년 7월 12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경제산업국 지역활성화

2). 연락처 : 전화 055-860-3193, 팩스 055-860-3706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지역활성화 지역경제팀(전화 055-860-319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 남해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앞에 “제5장 유통분쟁조정위원회” 를 삭제한다.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장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삭 제>
<p>제16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u>군수는 유통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법 제36조에 따라 남해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p> <p>② <u>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u></p> <p>③ <u>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전통시장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u></p>	<삭 제>
<p>제17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① <u>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u></p> <p>② <u>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③ <u>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p>	<삭 제>
제18조(위원의 제척 등) ① <u>위원회의 위원은 자신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u>	<삭 제>

<p><u>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제척된다.</u></p> <p><u>②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리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그 사유를 밝혀 해당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u></p> <p><u>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리·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u></p> <p><u>④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u></p>	
<p><u>제1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관계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u></p>	<p>&lt;삭 제&gt;</p>
<p><u>제2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u></p>	<p>&lt;삭 제&gt;</p>

남해군 공고 제2019 - 872 호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제14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의거 소유자(관리자)에게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처분사전통지 행정절차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0일

남해군수

- 1. 공고내용 :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에 따른 사전 통지
- 2. 공고기간 : 2019. 6. 21. ~ 2019. 7. 5. (15일간)
- 3. 공고방법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 4. 관련법규 : 건축법 제79조, 제80조
- 5. 공시송달 대상

(단위:원)

연번	건축주(행위자)		구분	위반건물 소재지	위반내용(위법내용)	반송 사유
	성명	주소				
1	배○일	남해군 삼동면 독일로 71-1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처분 사전통지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1166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단증축(건축법 제14조) - 1층 벽돌구조, 단독주택(창고), 26.4m<sup>2</sup></li> <li>○ 무단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 - 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일반음식점, 70.24m<sup>2</sup></li> </ul>	수취인 부재

6. 유의사항

- 위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및 사법기관에 고발에 앞서 처분사전통지하오니 2019. 7. 5.(금)까지 시정결과를 통보(연락) 또는 처분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의견제출서”를 남해군청 도시건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도시건축과(담당자: 정혜미 ☎055-860-34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공고 제2019-893호

## 남해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6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남해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최근 5년간 개최 실적이 없는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폐지(정비)함으로 위원회 관리에 따른 행정력 소모를 방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삭제(제3조부터 제7조)
- 나. 보조금 교부결정 시 지방보조금심의회 심의 추가(제8조)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19년 7월 17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행정복지국 문화청소년과

2). 연락처 : 전화 055-860-8643, 팩스 055-860-3750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문화청소년과 교육청소년팀(전화 055-860-864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 남해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중 “검토하여” 를 “검토한 후 남해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심의위원회의 설치) <u>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남해군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p>	<p>&lt;삭 제&gt;</p>
<p>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u>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p> <p>② <u>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u></p> <p>③ <u>위원은 다음의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군청의 기획예산담당관, 주민복지과장, 문화청소년과장, 건설교통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u></p> <p>1. <u>남해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u></p> <p>2. <u>경상남도남해교육지원청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소속직원 1명</u></p> <p>3. <u>학교교육과 운영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사람 4명</u></p> <p>④ <u>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u></p> <p>⑤ <u>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경비 보조지원업무 담당주사가 된다.</u></p>	<p>&lt;삭 제&gt;</p>
<p>제5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u>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u></p>	<p>&lt;삭 제&gt;</p>

<p><u>통할한다.</u>                  ② <u>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u></p>	
<p><u>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u>                  1. <u>교육경비 보조사업 심의·선정</u>                  2. <u>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u>                  3. <u>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u></p>	<p>&lt;삭 제&gt;</p>
<p><u>제7조(회의) ① 위원회는 교육경비 보조금 교부신청 요구 시 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u>                  ② <u>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p>	<p>&lt;삭 제&gt;</p>
<p><u>제9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u>                  1. ~ 3. &lt;생략&gt;                  ② ~ ③ &lt;생략&gt;</p>	<p><u>제9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남해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u>                  1. ~ 3. &lt;현행과 같음&gt;                  ② ~ ③ &lt;현행과 같음&gt;</p>

남해군 공고 제 2019 - 896호

## 공시송달 공고

「덕신소하천 정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협의요청의 등기우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협의가 불가하여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9. 6. 26.

남 해 군 수

1. 사 업 명 : 덕신소하천 정비공사
2. 위 치 :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212-3번지 일원
3. 사업시행자 : 경상남도 남해군수
4. 공고기간 : 2019. 6. 26. ~ 2019. 7. 10.(14일간)
5. 공고내용
  - 협의기간 : 2019. 6. 26. ~ 2019. 8. 30(금)까지
  - 협의장소 : 남해군청 안전총괄과 (☎055-860-3494)
  - 보상방법 : 계약체결 후 소유권 이전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계좌입금
    - 위 협의기간 중 미 협의 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절차에 따른 손실보상
  - 보상협의 시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 2부(보상금 수령용, 이전등기용), 주민등록 초본1부(전주소 포함),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기타관계서류
    - 지참물 : 인감도장, 신분증
6. 공시송달 대상자

일련 번호	소재 지	지번		지 목	지적 (m <sup>2</sup>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분할 전	분할후				주 소	성 명	주 소	성명	권리 관계	
1	설천면 덕신리	195-2	195-3	답	3,425	173	부산광역시 청학남로 27번길 9-5(청학동)	정기표				
2	"	1140-69		도	26	26	설천면 노량리 501-1	김덕용				
3	"	1394-1		천	717	717		서정기				미등기

7. 기타사항 및 문의처

- 보상협의 요청서는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송달)에 따라 공시 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같습니다.
- 기간 내 협의가 없을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수용재결을 진행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남해군 안전총괄과 (☎055-860-3494)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